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 관 명 (부 서 명)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연 월 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청구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 구체화(안 제13조)
- 나. 대불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47조제3항”을 “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5항”을 “법 제4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가압류 청구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
4. 손해배상의무자의 사망, 법인격 상실, 행방불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가능성
5.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 또는 소득, 상환계획 등을 고려한 대불금 상환 예상액
6.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의 경제적 어려움 및 신속한 피해구제의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불심사위원회) ① 조정중재원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대불청구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정중재원에서 대불청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대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1. 민사집행, 채권추심 등 법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심의하는 청구와 관련된 보건의료인 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3.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⑤ 제4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대불청구를 심사할 때마다 위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정중재원

에서 대불청구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대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위원의 제척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① ----- ----- -----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별제47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계정의 설치 절차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중재원의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금 대불계정) 별제47조제4항----- ----- ----- -----.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별제47조제5항에 따른 대불청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대불청구의 심사기준) 별제47조제6항-----심사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2. 대불을 청구하고 있는 자가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가압류 청구 등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⑧ 대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위원의 제척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